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1620 호, 제 1621 호

다. 제출일자 : 2020. 5. 29.

라. 회부일자 : 2020. 6. 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19	2,323	2,323	1,931	1,467	464	0	464	76.0
2018	2,225	2,225	5,122	4,591	531	22	509	89.6
2017	2,287	2,287	2,955	2,888	67	0	67	97.7

- 세입예산현액은 23억 2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9억 3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중 14억 67백만원을 수납하고, 4억 64백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4억 64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6.0% 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9	6,102	0	0	0	0	0	4,257	10,360	10,134	0	226 (2.2%)
2018	55,076	245	0	0	0	0	4,512	59,833	59,605	0	228 (0.4%)
2017	6,373	0	0	0	0	0	227	6,600	5,995	245	359 (5.4%)

- 당초 예산액 61억 2백만원에서 예비비 42억 5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03억 6천만원 중 97.8%인 101억 34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2억 2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42억 57백만원으로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판결금
: 42억 57백만원

5)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모두 없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억 26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율 (%)	비고
2019	10,360	226	2.2	
2018	59,833	228	0.4	
2017	6,600	359	5.4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 2억 26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2019	2,323	2,323	1,931	1,467	464	0	464	76.0
2018	2,225	2,225	5,122	4,591	531	22	509	89.6
2017	2,287	2,287	2,955	2,888	67	0	67	97.7

가) 개 요

- 세입예산현액은 23억 23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9억 3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4억 67백만원을 수납하고, 4억 6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4억 64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6.0%임.
- 당해연도 수납율은 전년(89.6%) 대비 감소(13.6%p↓)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3년간 수납율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임.

나) 세수추계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경우 19억 31백만원은 예산현액 23억 23백만원의 83.1%에 해당하며, 3억 92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비고
경상적 제외수입					
기타이자수입	320	382	382	62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완료 및 명달로 확장공사 등: 3억 82백만원
임시적 제외수입					
위약금	111	18	18	-93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지체상금: 1천 6백만원 ○ 시립노원청소년직업 체험센터: 2백만원
그외수입	1,879	1,016	1,016	-863	○ 용비교 행당중간 도로개설공사 및 응봉교 확장 성능개선공사: 2억 72백만원 ○ 울곡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자재비 과지급 환수금 2건: 1억 85백만원 ○ 서울역 7017프로젝트 건축공사 등 도시가스 배 관 이설공사 공사비 환불 2건: 1억 12백만원 ○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철도 건설공사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반환: 1억3백만원 ○ 서울역 7017프로젝트 건축공사 배전선로 이설 취 소에 대한 공사비 환불: 6천 3백만원 ○ 종로 중앙서브전용차로 설치공사 공사비 환수금: 6천만원 ○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 공사비 환수금 2건: 3천 4백만원 ○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공사 관련 도시가스 배관 이설공사 정산 환수금: 3천 3백만원 ○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관련 통신설비 이 설공사 정산 환수금: 2천 8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등 건설공사 계 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공사비 환수금 2건: 2 천4백만원 ○ 서울기록원 건립 기계공사 관급자재-대형냉장고 구매설치 보험료 등 정산 환불금: 1천 5백만원 ○ 잠원빛물펌프장 신설공사 등 교통안전관련 인건비

						원가 적용 부적정 환수금 3건: 1천 2백만원 ○부지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납(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1천3백만원 ○서울과학관 건립공사 등 배전선로 이설공사 완료에 따른 정산차액 환수 2건: 1천 8백만원 ○강동 아리수로 교통설비 신설공사 등 원이자부담금 정산처리 환부금 등 19건: 4천 4백만원
지난년도수입	8	509	45	501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가 6천 2백만원인데,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 외에 위탁공사비 보관금 및 공사 기성금과 같은 현금을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일상경비의 이자수입으로,

- 이는 세입이 일정치 않아 최근 5년간(’13년~’17년) 정기예금 평균잔액(79억 51백만원)에 이자율(2.12%)과 공공예금 평균잔액(99억 33백만원)에 이자율(1.52%)을 반영하여 당초 3억 2천만원으로 세입추계 하였는데([표 2] 참조),

[표 2] 기타이자수입의 최근 5년간 평균잔액 및 세수추계 산출근거(’13년 ~ ’17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평균
소계		18,414	21,283	22,204	10,891	16,629	17,884
평균잔액	정기예금	739	15,867	16,277	6,116	756	7,951
	공공예금	17,675	5,416	5,927	4,775	15,873	9,933
※세수추계 산출근거 : 정기예금 평균잔액×2.12% + 공공예금평균잔액×1.52%							

- 예상과 달리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완료 및 명달로 확장공사 등 공사대금 보관금 3억 82백만원의 이자수

입이 발생하여 6천 3백만원이 초과로 징수결정된 상황으로, 추후에는 사전에 이자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최근 3년간 기타이자수입의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현황을 살펴보면([표 3] 참조), 정기에금 및 공공예금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세입예산 추계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차년도 공사비 보관금을 조사·반영함으로써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표 3] 기타이자수입의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현황('17년 ~ '19년)
(단위 : 백만원)

소계	2017	2018	2019
예산현액 (a)	292	337	320
징수결정액 (b)	493	378	382
수납액	493	378	382
(b)-(a)	201	41	62

- '위약금'은 예산액 1억 1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4건의 지체상금 1천 8백만원으로 9천 2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공사지연 및 납품기한 미준수 사업 물량 등의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간('13~'17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세수추계를 하였으나 위약금 등 부과건수가 미발생한 것으로, 추후에도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위약금 부과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세수추계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18억 7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0억 16백만원으로 8억 6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세입추계가 어려워 최근 5년(‘13~’17년) 평균액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공사비용 정산 환수금 등 부과건수 미발생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징수 결정한 것임.
-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최근 5년간 체납징수율(전체 체납액 6천 7백만원, 17년도 징수액 9백만원 = 징수율 13.4%)을 반영하여 금회 예산현액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로는 5억 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4천 5백만원의 수납이 이루어졌음.
 -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장기체납액들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없으나, 예산액 대비 562% 초과 징수된 사항으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의 결과로 볼 때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다만, 당초 체납액의 징수에 대한 의지가 약해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다) 미수납액

- 금회 미수납액은 전년(5억 31백만원) 대비 6천 7백만원 감소한 전액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인 4억 64백만원으로, 공사비

과지급 환수금 등 총 14건으로 세부내용은 [표 4]와 같음.

[표 4]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건수	미수납액	사 유
계	14	464	
지난년도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상금 1건 1억 7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그외수입 13건 2억 9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과지급 환수금 2건 2억 5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노무비 환수금 · 응봉교 재설치사업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초과지급 환수금 - 소송비용 회수금 11건 4천만원 	14	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압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건/4억 29백만원 ◦ 무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건/31백만원 ◦ 폐업 및 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4백만원

- 이 중 재산압류 중이 5건에 4억 2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표 5] 참조), 그 중 ‘응봉교 재설치 사업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초과지급 환수건(2억 46백만원)’은 한신공영(주)가 행정처분을 불수용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임.

[표 5] 미수납액 중 재산압류 세부내역

(단위: 원)

과세년월	목		세부내역	미수납액	비고
			합계	428,267,540	
2018-06	지체상금	누비종합 건설(주) 대표 전상열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72,776,720	
2018-02	그외수입 (기타잡수 입)	한신공영 (주)	응봉교 재설치사업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초과지급 환수금	246,702,000	소송계류 중

2017-09	그 외수입 (소송비용)	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집행비용액확정에 따른 비용환수	2,997,320	
2017-04	그 외수입 (소송비용)	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	756,720	
2016-08	그 외수입 (소송비용)	김○○	선사로~고덕지구간도로확장 공사구간내명도소송비용(20 15가단112017)	5,775,120	

- 매 결산 심사 시 미수납액의 고질적인 체납이 소멸시효 완성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매년 이월되고 있는 상
황으로 체납액의 자진납부 거부 시 압류 조치한 재산에 대해
자진납부 거부 시 강제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
납징수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이체	이용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9	6,102	0	0	0	0	0	4,257	10,360	10,134	0	226 (2.2%)
2018	55,076	245	0	0	414	0	4,512	59,833	59,605	0	228 (0.4%)
2017	6,373	0	0	0	0	0	227	6,600	5,995	245	359 (5.4%)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61억 2백만원에 예비비 42억 57백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03억 6천만원이며, 이 중 97.8%인 101억 34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2억 26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집행잔액 (불용액)

- 금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2억 26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8%p 증가(0.4%→2.2%) 하였음.

[표 6]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율 (%)	불 용 사 유
일반회계	10,359	10,134	0	225	2.2	
공공건축물안전 자문단운영	15	14	0	1	6.7	- 자문위원수당 집행잔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4,695	4,582	0	113	2.4	- 낙찰차액(12백만원),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99백만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19	219	0	0	0.0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4	7	0	7	51	-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강우에 따른 비상발령 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했으나, 실제 비상근 무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건설정보관리시 스템(One-PMI S) 유지관리	391	363	0	28	7.2	- 시스템 유지관리 용 역계약 낙찰차액(17 백만원), 계약심사 절 감액(7백만원) 등 집 행잔액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	4,257	4,257	0	0	0.0	
기본경비	768	692	0	76	9.9	- 경상적 경비로 집행잔 액

- 먼저,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건설공사장의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및 제설대책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와 주변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 금회 예산현액 1천 4백만원 대비 51%인 7백만원을 불용하였

는데, 불용사유는 당해연도에 극한 기상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 등이 감소한 것([표 7] 참조)이 주된 원인임.

[표 7] 2019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의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9예산편성	2019예산집행	잔액	집행액 세부내역
계	14,500	7,083	7,417	
풍수해대책 상황실운영 급량비	5,600	4,384	감 1,216	풍수해 (보강 17회, 1단계 10회, 2단계 4회)
제설대책 상황실운영 급량비	4,400	424	감 3,976	제설 (보강 10회, 1단계 5회)근무자 급량 비 지급
풍수해 책자 제작비	2,500	1,285	감 1,215	풍수해대책 책자 제작 210부
상황실 운영 및 각종 비품구입비	2,000	990	감 1,010	토너 등

<예산편성 기준>

- 재난안전(풍수해,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급량비 : 10,000천원
 - 풍수해 급량비 : 700인×1식×8,000원 = 5,600천원
 - 제설 급량비 : 550인×1식×8,000원 = 4,400천원
- 수방책자 및 상황실운영 : 4,500천원
 - 수방책자 (250부×10,000=2,500천원)
 - 상황실 운영 각종 비품 구입비 (간이침대,조끼 등 2,000천원)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표 8] 참조), 매년 지출액 감소로 불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횟수를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 개선 및 불용율 저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 8]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2017	19,120	19,120	13,125	5,995 (31.35%)
	2018	21,280	21,280	11,103	10,177 (47.82%)
	2019	14,500	14,500	7,083	7,417 (51.15%)

-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의 공정관리 및 현장안전관리 상황 등을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 금회 예산현액 3억 91백만원 대비 7.2%인 2천 8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17백만원)과 계약심사 절감액(7백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4백만원)에 따른 것임.
 - 이 중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 계약의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표 9] 참조), 심사평가 결과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의 산출계산 오류로 1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스템 운영비 중 적용노임단가의 오류로 인해 5백만원이 증액되는 등 계약심사 결과 7백만원이 절감되어 불용되었음.

- 이는 용역 발주 전에 설계금액의 타당성과 금액 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용역 계약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표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계약심사과 심사 결과

계약심사과 심사결과 요약서							
<p>■ 용역명 : 2019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p> <p>■ 사업기간 : 2019. 1. ~ 12.</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항목	구분		설계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주요 심사내용	
	순 용 역 원 가	재료비	해당없음				
소계							
노무비		응용SW 유지관리	190,298	175,734	-14,563	○ 산출계산 오류식 수정: 유지관리비 이윤 삭제	
		상용SW 유지관리	13,554	13,554	0		
		시스템 운영	48,212	53,497	5,284	○ 최근 공표('18.8./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 노임단가 적용	
		소계	252,065	242,786	-9,278		
직접경비		인쇄 및 사용료	29,522	28,707	-815	○ 시장조사(업체견적) 결과에 따라 단가 조정	
		소계	29,522	28,707	-815		
계			281,588	271,494	-10,093		
제 경 비			28,927	32,098	3,170		
기 술 료			3,857	4,279	422		
총 원 가			314,372	307,872			
부가가치세			31,437	30,787			
총용역비			345,810	338,659	-7,151		

* 총용역비는 천원미만 절사

- ‘효율적인 청사관리’의 경우 예산현액 46억 95백만원 중 45억 83백만원을 지출하고 2.4%인 1억 12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공공운영비의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시 낙찰차액 1천 2백만원과 지출잔액 9천 9백만원임 ([표 10]참조).

[표 10] ‘효율적인 청사관리’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예산편성 (B)	2019예산집행 (A)	잔액(B-A)
계	4,694,472	4,582,676	111,79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276	34,220	56
사무관리비	4,279,146	4,203,465	75,681
공공운영비	118,690	104,393	14,297
국외업무여비	30,000	17,811	12,18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0	69,999	1
특정업무경비	105,000	95,488	9,512
자산및물품취득비	57,360	57,300	60

- 지출잔액 중 사무관리비가 7천 6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가 5천 9백만원으로 ([표 11]참조), 예산편성 시 전년 대비 3% 인상률을 반영하였으나 인상률이 낮아 미집행된 잔액임.
-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지난 최근연도 평균 인상율을 적용하기보다는 가급적 당사자간의 사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1]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과목	세부항목	2019예산편성	2019예산집행	잔액	비고
사무관리비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4,215,146	4,156,315	58,831	
	체력단련실 운영	30,000	30,000	0	
	자문위원회 수당	24,000	7,150	16,850	
	청사관리	10,000	10,000	0	
계		4,279,146	4,203,465	75,681	

- 다음으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기본경비는 정책 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부서 인원(정원)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 금회 예산현액 7억 68백만원 대비 9.9%인 7천 6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사유는 예산편성 시(‘18. 6월) 208명이었던 정원이 민선 7기 1단계(‘18년 11월) 및 2단계(‘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2개과 15명이 감조정되어 193명으로 변동됨에 따라 급량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출장여비 등에서 지출액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1건 42억 57백만원으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따른 것임.

[표 1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내 역	금 액	비 고
1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4,257	

-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 공사대금 지급’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공사의 시공자인 삼성물산(주)이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두 차례(7개월, 12개월) 연장되어 간접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2019.5월 2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에 대한 이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42억 57백만원을 선집행한 것임.

[표 1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

구 분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3,284,244,318	4,113,598,943원 (=9,670,274,936원x248/583) - 829,354,625원 (1심 판결금) = 3,284,244,318원
이 자	973,126,091	
계	4,257,371,000	

- 예비비 사용은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소송 판결금에 대한 이자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나,
- 서울시가 그동안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소 일방적 측면에서 정책변동과 기본계획변경, 설계변경 등을 강제했던 측면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처럼 소송으로 전개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준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항소심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문화재 발굴 작업 및 예산 축소조정 등 원고(삼성물산㈜)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준공금 수령 이전에 지급을 요청한 4차공사(36일), 5차공사(90일), 6차공사(122일)에 대한 원고의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여 재판부에서는 서울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이에 반해 서울시는 원고가 차수별 계약 시 추가 간접비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총괄계약에 대한 조정 신청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차수연장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해석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¹⁾에서 인정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고,
- 특히, 6차수 계약기간 연장은 절대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된 증액사업비 내에 간접비가 포함된 것이므로 간접비를 증액하는 것은 중복으로 판단하여 현재 상고('19. 06. 13 상고

1) 대법원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2018. 10. 30 선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할 뿐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안에서 총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장 접수)를 제기한 상태임.

마) 차년도 사고이월 (결산서 p.19~20)

○ 차년도 사고이월 없음.

[붙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결산검사 권고사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관실국
27	법령에 근거한 시비 끝수 계산 및 세입세출외현금 계정 관리운영의 합리화 권고	기획조정실 재무국 도시기반시설본부

27. 법령에 근거한 시비 끝수 계산 및 세입세출외현금 계정 관리운영의 합리화 권고

[세입세출외 현금 / 기획조정실, 재무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 등의 시비 반납 시 국고금과 달리 뚜렷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시비 끝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뒤 반납 받고 있는데 2019년 서울시회계 단수계좌로 입금된 시비 반납금 단수총액은 ₩46,086에 불과함.

현행 업무절차에 따르면 끝수가 있는 시비반납금 또는 관련이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경유한 뒤 서울시세입계좌로 이체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회계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6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자금관리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무적으로는 끝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시세외수입 부과고지 시스템상 세입 가상계좌 발생이 불가능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이 이에 속하고 2019년 보관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외현금 중 보관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액 ²⁾	지출액	잔액	비고
본청	158,411	83,359	75,051	
소방재난본부	3,875	3,845	30	
상수도사업본부	8,897	8,745	151	
한강사업본부	2,781	2,691	90	
도시기반시설본부	10,653	1,890	8,762	
동부도로사업소	618	482	135	기타보관금
서부도로사업소	15	0	15	기타보관금
인재개발원	25	22	2	기타보관금
공무원수련원	353	0	353	기타보관금
보건환경연구원	11	11	0	기타보관금
은평병원	340	340	0	기타보관금
농업기술센터	7	7	0	기타보관금
서울시립미술관	0.2	0.2	0	기타보관금
동부녹지공원사업소	6	1	4	기타보관금
서울대공원	131	131	0	기타보관금
서울공예박물관	7	7	0	기타보관금
서울도서관	25	25	0	기타보관금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경유 구체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11월5일 ‘2018공연예술창작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7,829,738 및 관련 이자 ₩2,932,493이 입금(세입세출외현금 수입)처리된 뒤 2019년12월5일 ₩50,762,160이 시세의수입계좌로, ₩11이 시단수계좌로 출금(세입세출외현금 지출)처리되고 있고 2019년6월24일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부대비 이자 ₩939,723,286이 입금(세입세출외현금 수

2) 전년도이월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입)처리된 뒤 2019년6월25일 ₩939,723,280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계좌로, ₩6이 시단수계좌로 출금(세입세출외현금 지출)처리되고 있는 등 끝수처리를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경유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또한 신사사거리 ~ 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완료전 관련 2010 ~ 2017년 발생이자 ₩332,763,230이 2019년6월25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입계좌로 출금(세입세출외현금 지출)처리되는 등 시세의수입 관리부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관련법령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지방보조금의 반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같은 뜻 행안부 예규 제108호)

○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나. 시정권고

지방보조금 또는 관련이자의 반환 시 끝수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첫째, 국고금 관리법, 지방회계법령,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령조항에 부합하고 둘째,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셋째, 끝수 계산에

따른 시세수입의 실익이 미미한 점을 볼 때 업무절차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세입세출 해당항목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경유를 지양하여 관련 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근절할 것을 권고함.

현행 업무절차상 세입세출 해당항목이 시세외수입 부과고지 시스템 상의 사유로 세출외현금 계좌경유사례가 빈발하는 점, 장기간 세입항목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함으로써 인해 시세수입관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